

2026 아트코리아랩 글로벌 교류·유통 지원 자유형 공모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코리아랩은 예술기술 분야의 예술 현장 자생력 도모를 위해 <2026 아트코리아랩 글로벌 교류·유통 지원- 자유형> 공모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. 자유형 공모는 국내 예술단체들이 예술기술 융합 작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다양한 해외 예술현장의 확장을 희망하는 예술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□ 공모개요

공고명	2026 아트코리아랩 글로벌 교류·유통 지원 - 자유형
모집 기간	공모 게시일 ~ 2026. 6. 19.(금) 15:00까지
사업 기간	• 2026년 8월 ~ 12월 (5개월)
지원 대상	• 예술-기술 융합 작품의 글로벌 유통이 확정된 예술단체 * 해외 예술-기술 마켓, 페스티벌, 학술대회 등 유통처는 별도의 제한없으나, 유통 작품이 예술-기술융합 작품이어야 함
지원 자격	• 예술-기술 융합 작품의 전시/시연/발표 등 글로벌 유통이 확정된 예술단체 또는 팀 •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 • 한국 예술단체로 전체 참여 인원의 해외여행 및 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없는 단체
지원 규모	최대 10건 내외 (건별 최대 50백만원) • 총 사업비 중 10% 이상 자부담 필수
지원항목	지원액 편성 시 2026 아트코리아랩 글로벌 교류·유통 지원 - 자유형 기준에 따름 • 전문가 활용비: 통번역 등 • 소모품비: 소모성 물품 구입비 • 지급수수료: (통번역, 홍보물 제작 등) 업체 계약 • 운송비: 출품작 왕복 운송비 등 • 공공요금: 출품작 보험료 및 로밍비 등 • 임차료: 기기 임차료 등 • 홍보마케팅비: 홍보물 제작, 온·오프라인 매체 (광고) 이용비 등 • 용역비: 작품 유통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대행용역비 • 국외여비: 항공비, 숙박비, 여행자 보험 등 • 고용부담금: 예술인 고용 보험금 등
지원불가 항목	• 대표 보수 및 기획비 책정 불가능 •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, 공과금,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 경비 •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,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식비 등의 간접경비,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제한 업종

<p>필수 의무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정단체 대상 사업설명회 및 성과공유회 참석 • 아트코리아랩 AI-융합 페스티벌(26년 11월 1주 예정) 참여 요청을 할 수 있음 • 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시, 문화체육관광부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C, 아트코리아랩 B 등 지원사업 관련 기관 표기 필수 •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인터뷰, 사진 제공 등 홍보자료 요청 시 적극 참여 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의무 교육 수강 및 서약서 제출 • <u>예술가/단체가 간이 또는 과세사업자인 경우, 지원금은 공급가액만 편성</u> •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정산/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 준용 *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회계검사를 받은 후 정산보고서 제출 • 이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 필수, 정산·실적 보고, 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• 선정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시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4조의4에 따른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(서면계약 체결 의무사항), 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하거나, 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체결된 계약내용을 미이행할 경우, 해당 단체는 문체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• 선정자는 사업과정 및 지원금 지급과 정산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센터의 안내 및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, 사업 수행 시 센터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
<p>지원자격 제외대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예술기술 융합이 드러나지 않는 단순 공연, 전시의 경우 지원 불가 ※ 해외 예술-기술 기관 리서치, 교류 행사, 부스 참여 등 작품 공연 및 전시가 아닌 단순 참여 지원 불가 ※ 예술단체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※ 예술가 개인 자격으로 지원 불가 • 본 사업과 동일한(유통) 내용으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 신청할 수 없으며, 중복 수혜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지자체 문화재단 민간재원 등을 통해 제작지원되는 작품의 경우 타 기관 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• 「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13조 제4항이 명시하는 선정자격에 위배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「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13조 제4항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.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• 문화체육관광부의 「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• 신청일 기준,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, 4대보험을 체납 중인 경우 • 사업 공고일 기준 정부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•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,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,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경우 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았거나,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자(개인, 단체, 기업 등) •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 • 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 제13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자(개인, 단체, 기업 등) • 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(다만, 대표권이나

	<p>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 •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(단,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이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예경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) <p>* 지원 선정된 경우라도 문체부 <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>의 의결사항에 따라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</p>
--	---

□ 접수 방법

○ (접수기간) 공모 게시일 ~ 2026. 6. 19.(금) 15:00까지

* 접수 마감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함

* 접수 마감일 이후 최종 선정 수의 1.5배 미만 접수 시 접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

○ (접수방법)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

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온라인 신청

- 로그인 후, 보조금 주관기관 「예술경영지원센터」 선택

- 지원신청 > 지원관리 > 「2026 아트코리아랩 글로벌 교류 유통 지원 자유형」 공고 선택 후 신청서 작성

※ 우편, 방문, 이메일 접수 불가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○ (제출서류)

연번	제출서류	비고
1	[필수] 공모신청서 1부	지정서식(서명날인 필수)
2	[필수] 예술-기술 페스티벌/마켓 등 참여/초청 증빙서류 1부	
3	[필수] 국세 및 지방세 완납(납부)증명서 각 1부	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
4	[필수] 포트폴리오	자유서식
5	[선택] 화물 운송 견적서 1부	운송비 2천만원 이상 편성 시 필수 제출
6	[필수] 단체의 성격에 따라 아래 서류 제출	
6-1	고유번호증 사본 1부	
6-2	사업자등록증 각 1부	
	4대보험 완납(납부)증명서 각 1부	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

* 필수자료 미제출,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 시 별도 고지없이 심사 제외

* 발표심의(또는 통합심의)는 별도의 발표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○ (주의사항)

- 지원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지원조건과 맞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함

- 마감 당일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접수가 안될 수 있으니 사전제출 권장 (시스템 오류는 책임지지 않음)

- 지원사업을 완료(정산확정 및 잔액반납)하지 못한 자는 신청할 수 없고, 지원금은 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되므로 사업의 선정-집행-정산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함

□ 심의 및 선정

- (심의일정) 2026. 6월 5주 ~ 7월 3주 (예정)
- (심의방법 및 절차) 외부 전문가에 의한 1차 심의(서류) 및 2차 심의(발표)

구분	내용
행정검토 (6월 3주)	· 신청서류 검토, 서류 미비 등 결격 지원서 제외
1차 서류심의 (6월 4주~ 6월 5주)	· 외부 심의위원이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 · 최종선정 인원의 1.5배수 내외 선정 * 접수결과 지원 규모의 2배수 이하일 경우, 서류심의를 겸한 발표심으로 대체할 수 있음
2차 발표심의 (7월 1주 ~ 7월 2주)	· 외부 심의위원이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(*지원자당 10분 내외 발표)
최종 결과발표 (7월 3주)	· 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 대상 개별 연락 *예비 3인을 선별하여,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 인원으로 충원함

*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(심의기준)

연번	평가지표	가중치	평가내용
1	사업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	30%	-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가? - 사업 내용과 계획의 필요성이 타당한가? - 사업추진 및 예산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?
2	수행역량 및 전문성	30%	-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? -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성을 갖추었는가?
3	국내외 파급효과	40%	- 참여하는 해외 유통처의 국제 인지도는 어떠한가? - 사업 수행 결과를 통해 예술기술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기여도가 예상되는가?

* 동점자 발생 시, 다음 지표 순으로 고득점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함 (지표 3 > 지표 2 > 지표 1 순으로 적용)

□ 문의

- (공모내용)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코리아랩 예술기술융합팀

T. 02-2098-2942 / E. akl.global@gokams.or.kr

* 문의시간: 월~금 10:00-16:00, 공휴일 및 점심시간(12:00-13:00) 제외

- (NCAS 사용문의) NCAS고객만족센터 1577-8751

※ 신청서 제출 전에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」을 충분히 숙지하며,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
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(용자·보증)
○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예술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확장과 지속 운영을 위한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(용자·보증)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○ 금융지원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세요. -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(www.gokams.or.kr) > 알림/소식 > 공지사항 > '용자' 또는 '보증' 검색
○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(용자·보증) 문의 -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본부 금융지원팀(T.02-708-2267~8 E. artsfinance@gokams.or.kr)